



제1편

채권총칙

- 제 1 장 채권법 일반
- 제 2 장 채권의 효력
- 제 3 장 수인의 채권자 및 채무자
- 제 4 장 채권양도와 채무인수
- 제 5 장 채권의 소멸





제2장

채권의 효력

www.imbccampus.com

제1절 효력 일반

1. 채권의 효력 일반

채권의 효력이란 채권의 내용을 실현하기 위한 채권자의 권능이나 권한을 뜻한다. 채권의 효력은 임의적 효력, 강제적 효력, 대외적 효력으로 나눌 수 있다.

(1) 채권의 임의적 효력

채권의 임의적 효력으로서 청구력과 급부보유력이 인정된다. 청구력이란 채권자가 채무자에게 채무의 이행을 청구할 수 있는 효력을 뜻하며, 급부보유력이란 채무자가 이행한 급부를 수령하여 적법하게 보유할 수 있는 효력을 말한다.

(2) 채권의 강제적 효력

채권의 강제적 효력으로서 소구력과 집행력이 인정된다. 소구력이란 소로써 채무이행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하며, 집행력이란 판결의 내용인 급부의무를 강제집행에 의하여 실현시키는 효력을 말한다.

(3) 채권의 대외적 효력

채권의 대외적 효력으로 채권자대위권 및 채권자취소권이 인정된다. 채권자대위권이란 채권자가 자기의 채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자기채무자에게 속하는 권리를 대신 행사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하며(\$404), 채권자취소권은 채권자를 해함을 알면서 행한 채무자의 법률행위(사해행위)를 취소하여 채무자의 재산회복을 재판상 청구할 수 있는 채권자의 권리를 말한다(\$406).

2. 관련 문제-자연채무

(1) 의의

자연채무란 채무자가 임의로 이행한 경우 채권자가 유효한 변제로 수령·보유할 수 있으나(청구력과 급부보유력은 인정한다), 채무자가 임의로 이행하지 않는 경우 채권자가 소를 제기하거나 강제집행을 할 수 없는(소구력과 집행력은 인정되지 않는다) 채무를 말한다.

(2) 성질

자연채무는 강제적 효력만 없을 뿐이므로 자연채무를 자동채권으로 하여 상계하거나, 제삼자에게 채권을 양도할 수 있다. 또한 자연채무를 피담보채권으로 하여 인적·물적 담보를 설정하는 행위, 자연채무를 기초로 하는 대물변제의 예약, 경개 등도 가능하다.

(3) 구체적인 예

자연채무의 예로 당사자 간에 부제소 특약이 있는 경우, 종국판결 선고 후에 채권자가 소를 취하한 경우, 파산절차에서 면책된 채무 등이 있다.

제2절 채무불이행

제390조 【채무불이행과 손해배상】 채무자가 채무의 내용에 좇은 이행을 하지 아니한 때에는 채권자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그러나 채무자의 고의나 과실 없이 이행할 수 없게 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의의

채무자가 자신의 채무를 고의 또는 과실로 이행하지 않는 경우를 채무불이행이라고 한다.

2. 채무불이행의 성립요건

채무불이행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채무자의 채무내용에 좇은 이행이 없을 것, 채무자에게 고의나 과실의 귀책사유가 존재할 것, 채무불이행이 위법할 것, 채무자에게 책임능력이 있을 것을 요건으로 한다.

3. 채무불이행의 유형

채무불이행의 유형으로 이행지체, 이행불능, 불완전이행 등이 있으며 이행거절을 독자적 채무 불이행의 유형으로 인정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학설이 대립한다.

4. 이행지체

제387조 【이행기와 이행지체】 ① 채무이행의 확정된 기한이 있는 경우에는 채무자는 기한이 도래한 때로부터 지체책임이 있다. 채무이행의 불확정된 기한이 있는 경우에는 채무자는 기한이 도래함을 안 때로부터 지체책임이 있다.
 ② 채무이행의 기한이 없는 경우에는 채무자는 이행청구를 받은 때로부터 지체책임이 있다.

(1) 의의

채무의 이행이 가능함에도 불구하고 채무자의 고의·과실로 이행을 경과하도록 이행하지 않는 채무불이행 유형이다.

(2) 요건

이행지체가 성립되기 위해서는 채무의 이행이 가능할 것, 채무자가 이행기에 이행을 하지 않을 것, 채무자의 고의·과실이 있을 것, 이행하지 않는 것이 위법할 것(동시이행항변권이나 유치권 등의 사유가 없을 것)이 요구된다.

(3) 이행지체가 되는 시기

확정기한부 채무	원칙	기한이 도래한 때(§387 ①)
	예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증권적 채권(☞ 지시채권, 무기명채권)의 경우: 기한도래 후 증권을 제시하여 청구한 다음 날 • 추심채무 등 채무이행에 채권자의 협력이 필요한 경우: 채권자가 필요한 협력 행위 후 이행을 최고했음에도 채무자가 이행하지 않은 때 • 동시이행의 관계에 있는 경우: 상대방의 이행제공을 받고도 자기의 채무를 이행하지 않은 때
불확정기한부 채무	원칙	기한의 도래를 안 때부터(§387 ①) 지체가 되나 채무자가 기한의 도래를 모르는 경우 채권자의 이행최고가 도달한 다음 날부터
기한을 정하지 않은 채무	원칙	이행청구를 받은 때부터(§387 ②)
	예외	기한의 정함이 없는 소비대차의 경우 대주가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최고하면 (§603 ②) 상당한 기간이 경과한 때부터

기
한
이
익
상
실

기한의 이익을 상실한 채무

1. 기한이익 상실의 의의

채무자에게 기한의 이익이 주어지는 것은 채무자에 의해 채무의 성실한 이행이 행해질 것을 채권자가 신뢰하기 때문이므로 이러한 신뢰가 파괴된 경우 채무자는 기한의 이익을 주장할 수 없다.

2. 기한이익 상실의 사유

제388조 【기한의 이익의 상실】 채무자는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기한의 이익을 주장하지 못한다.

- 1. 채무자가 담보를 손상, 감소 또는 멸실하게 한 때
- 2. 채무자가 담보제공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때

3. 기한이익 상실의 효과

기한의 이익을 상실케 한 사유로 기한의 이익을 상실한 경우 채무자는 기한의 이익을 주장하지 못한다(§388). 다만 기한이 도래한 것으로 의제되는 것은 아니므로 채권자는 이행기 이전이라도 이행을 청구할 수 있고, 이행기의 도래를 기다려 이행을 청구할 수도 있다. 기한의 이익을 상실한 채무자에게 지체책임은 부담시키려면 채권자의 이행청구가 필요함이 원칙이나 정지조건부 기한 이익 상실 특약의 경우 최고 없이도 이행지체에 빠지게 된다.

4. 관련 판례

(1) 대판 1999. 7. 9. 99다15184

채권자의 별도의 의사표시가 없더라도 바로 이행기가 도래한 것과 같은 효과를 발생케 하는 이른바 정지조건부 기한이익 상실의 특약을 하였을 경우에는 그 특약에 정한 기한의 이익 상실사유가 발생함과 동시에 기한의 이익을 상실케 하는 채권자의 의사표시가 없더라도 이행기 도래의 효과가 발생하고, 채무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때부터 이행지체의 상태에 놓이게 된다.

(2) 대판 2002. 9. 4. 2002다28340

형성권적 기한이익 상실의 특약이 있는 경우에는 그 특약은 채권자의 이익을 위한 것으로서 기한이익의 상실사유가 발생하였다고 하더라도 채권자가 나머지 전액을 일시에 청구할 것인가 또는 종래대로 할부변제를 청구할 것인가를 자유로이 선택할 수 있다.

(4) 이행지체의 효과

① 현실적 이행의 강제-강제이행

이행지체의 경우 본래의 급부가 불가능한 것이 아니므로 채권자는 채무자에게 급부를 청구할 수 있으며, 채무자가 이에 불응하면 법원에 강제이행을 청구할 수 있다.

② 채무자의 책임가중

제392조 【이행지체 중의 손해배상】 채무자는 자기에게 과실이 없는 경우에도 그 이행지체 중에 생긴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그러나 채무자가 이행기에 이행하여도 손해를 면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채무자가 이행을 지체하고 있는 중에 채무자 과실 없이 이행불능이 되었다더라도 채무자는 그 이행지체 중에 생긴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392). 이는 채무자의 과실 없이 불능이 된 경우까지 채무자가 책임을 지게 규정한 것으로, 채무자의 책임을 가중한 것이다. 다만 예외적으로 이행기에 이행을 하였더라도 손해를 피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392 단서).

③ 계약의 해제

이행지체의 경우 채권자는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이행을 최고하고, 그 기간 내에 채무자가 이행하지 않을 경우 해제권을 행사할 수 있다(§544). 그러나 채무자가 미리 이행하지 않을 의사를 표시했거나 채무자의 급부가 정기행위인 경우에는 채권자는 이행청구 없이도 채권자에게 해제권이 발생한다(§544 단서, §545). 해제권을 행사한 경우에도 손해배상 청구권은 영향을 받지 않는다(§551).

④ 손해배상

제395조 【이행지체와 전보배상】 채무자가 채무의 이행을 지체한 경우에 채권자가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이행을 최고하여도 그 기간 내에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지체 후의 이행이 채권자에게 이익이 없는 때에는 채권자는 수령을 거절하고 이행에 갈음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이행지체의 경우 채권자는 본래의 급부에 대한 이행청구뿐 아니라 지체로 인해 발생한 손해배상도 청구할 수 있다(지연배상). 그러나 채권자가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이행을 청구하였음에도 채무자가 그 기간 내에 이행하지 않거나, 지체 후의 이행이 채권자에게 이익이 없는 때에는 채권자는 수령을 거절하고 이행에 갈음한 손해배상(전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5) 이행지체의 종료

채무자는 지연배상과 함께 채무의 내용에 좇은 이행을 제공함으로써 이행지체의 상태를 종료시킬 수 있다(§461). 그 외에 이행지체 후 이행이 불능으로 된 경우에는 이행불능에 의해 이행지체는 종료한다(통설). 다만 지체 후 이행불능이 되기까지의 기간 동안의 지연배상의무는 소멸하지 않는다. 채권이 소멸하거나 채권자가 지체의 책임을 면제한 때에도 이행지체는 종료한다.

5. 이행불능

(1) 의의

이행불능이란 채권성립 후 채무자의 고의·과실로 이행이 불가능하게 된 채무불이행을 말한다.

(2) 이행불능의 판단시기

이행불능의 여부 판단은 이행을 기준으로 한다. 하지만 이행기 전이라도 이행할 수 없음이 확정적인 경우 이행불능으로 간주한다. 특히 정지조건부 법률행위의 경우 원시적 불능인지 후발적 불능인지의 구별시점은 법률행위 시가 된다(통설).

(3) 이행불능의 판단기준

이행불능은 단순히 절대적·물리적 불능에만 한정하지 않고 사회통념상 또는 거래상 채권자가 채무자의 이행을 도저히 기대할 수 없는 경우에도 인정된다. 즉 채무의 내용에 합치하는 결과를 채무자의 행위에 의하여 실현시킬 수 없거나 그러한 결과의 실현에 필요한 행위가 이루어질 수 없는 경우에도 해당한다.

대판 2006. 6. 16, 2005다39211

채무의 이행이 불능이라는 것은 단순히 절대적·물리적으로 불능인 경우가 아니라 사회생활에 있어서의 경험법칙 또는 거래상의 관념에 비추어 볼 때 채권자가 채무자의 이행의 실현을 기대할 수 없는 경우를 말하는 것인바, 매매목적물에 대하여 가압류 또는 처분금지가처분 집행이 되어 있다고 하여 매매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가 불가능한 것은 아니며, 이러한 법리는 가압류 또는 가처분집행의 대상이 매매목적물 자체가 아니라 매도인이 매매목적물의 원소유자에 대하여 가지는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 또는 분양권인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

(4) 이행불능의 유형

이행불능의 경우 객관적 불능과 주관적 불능, 원시적 불능과 후발적 불능, 종국적 불능과 일시적 불능으로 구분할 수 있다.

(5) 이행불능의 효과

① 법정해제권

제546조 【이행불능과 해제】 채무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이행이 불가능하게 된 때에는 채권자는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채무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이행불능이 된 경우 채권자는 최고 없이도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546).

② 전보배상청구권

급부의 전부가 채무자의 귀책사유로 이행불능이 된 경우 채무자는 급부의무를 면한다. 채권자는 더 이상 채무 본래의 내용에 따른 청구는 할 수 없고 이행이익을 내용으로 하는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다(§390). 이를 전보배상청구권이라고 하며, 이러한 전보배상청구권은 급부청구권이 손해배상청구권으로 변경된 것에 불과하므로 채권관계의 동일성이 유지된다. 따라서 원래 채권에 붙어 있던 보증채무, 질권 등의 담보권은 소멸되지 않는다.

③ 대상청구권

㉠ 의의

대상청구권이란 채무자에게 이행불능이 발생한 것과 동일한 원인에 의하여 채무자가 이행의 목적물에 갈음하는 이익을 얻었을 경우에 채권자가 채무자에 대하여 그 이익의 상환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 대상청구권 인정 여부

「민법」에 규정이 없는 대상청구권은 일반적으로 인정될 것이 아니라는 견해도 있으나 일반적인 견해 및 판례는 대상청구권을 일반적으로 인정할 수 있다고 한다.

대판 1995. 12. 22, 95다38080

우리 「민법」에는 이행불능의 효과로서 채권자의 전보배상청구권과 계약해제권 외에 별도로 대상청구권을 규정하고 있지는 않으나 해석상 대상청구권을 부정할 이유가 없다.

㉢ 대상청구권의 요건 및 제한

판례는 대상청구권의 발생요건에 대하여 급부가 후발적으로 불능하게 되어야 하며, 급부를 불능케 하는 사정의 결과로 채무자가 채권의 목적물에 관하여 대신하는 이익을 취득할 뿐 아니라, ‘급부를 불가능하게 하는 사정’ 및 채무자가 취득한 ‘대신하는 이익’ 사이에 상당 인과관계가 존재할 것을 요한다고 판시하였다(대판 2003. 11. 14, 2003다35482). 또한 일정한 경우 합리적으로 대상청구권 발생을 제한한다.

대판 1996. 6. 25, 95다6601

쌍무계약의 당사자 일방이 상대방의 급부가 이행불능이 된 사정의 결과로 상대방이 취득한 대상에 대하여 급부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그 당사자 일방이 대상청구권을 행사하려면 상대방에 대하여 반대급부를 이행할 의무가 있는바, 이 경우 당사자 일방의 반대급부도 그 전부가 이행불능이 되거나 그 일부가 이행불능이 되고 나머지 잔부

의 이행만으로는 상대방의 계약목적 달성을 할 수 없는 등 상대방에게 아무런 이익이 되지 않는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상대방이 당사자 일방의 대상청구를 거부하는 것이 신의칙에 반한다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당사자 일방은 상대방에 대하여 대상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다.

대판 1996. 12. 10, 94다43825

「민법」상 이행불능의 효과로서 채권자의 전보배상청구권과 계약해제권 외에 별도로 대상청구권을 규정하고 있지는 않으나 해석상 대상청구권을 부정할 이유는 없는 것이지만, 점유로 인한 부동산소유권 취득기간 만료를 원인으로 한 등기청구권이 이행불능으로 되었다고 하여 대상청구권을 행사하기 위하여는 그 이행불능 전에 등기명의자에 대하여 점유로 인한 부동산소유권 취득기간이 만료되었음을 이유로 그 권리를 주장하였거나 그 취득기간 만료를 원인으로 한 등기청구권을 행사하였어야 하고, 그 이행불능 전에 그와 같은 권리의 주장이나 행사에 이르지 않았다면 대상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다고 봄이 공평의 관념에 부합한다.

㉔ 대상청구권의 성질

대상청구권은 채권적 청구권이다. 따라서 채권자에게 곧바로 대상에 관한 권리가 귀속되는 것은 아니다.

대판 1996. 10. 29, 95다56910

소유권이전등기무의 목적 부동산이 수용되어 그 소유권이전등기무가 이행불능이 된 경우, 등기청구권자는 등기의무자에게 대상청구권의 행사로써 등기의무자가 지급받은 수용보상금의 반환을 구하거나 또는 등기의무자가 취득한 수용보상금청구권의 양도를 구할 수 있을 뿐 그 수용보상금청구권 자체가 등기청구권자에게 귀속되는 것은 아니다.

6. 불완전이행

(1) 의의

불완전이행이란 채무자가 이행행위를 하였으나 채무자의 채무이행이 채무내용에 좇은 것이 아닌 채무불이행유형을 말한다. 즉 급부목적물이나 급부결과 또는 그 이외의 채권자의 법익에 손해를 발생시킨 경우이다.

(2) 인정근거

불완전이행의 근거를 부수적 용태의무 위반에서 찾는 견해, 급부의무의 위반에서 찾으려는 견해 등이 있으나 우리 「민법」은 채무불이행의 요건을 포괄적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390) 불완전이행의 법적 근거는 「민법」 제390조가 된다(통설).

(3) 성립요건

불완전이행의 성립요건으로 채무자의 이행행위가 있을 것, 채무자의 이행이 불완전할 것, 채무자의 고의, 과실 등 귀책사유가 있을 것, 채무자의 불완전이행이 위법할 것이 요구된다.

(4) 불완전이행의 효과

① 완전이행이 가능한 경우

채무자가 불완전이행을 하였으나 완전이행이 추후에 가능하다면, 채권자는 완전이행청구권을 갖는다. 하지만 다시 완전한 급부를 하지 않더라도 불완전급부를 추완하는 방법이 있다면 신의칙상 추완청구권만이 인정된다. 이러한 완전이행청구권 및 추완청구권이 외에도 이행지체에 따른 손해배상청구권이 인정된다. 또한 채권자가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이행의 최고를 한 경우 그 기간 내 채무자가 이행하지 않으면 계약해제권도 인정된다.

② 완전이행이 가능하지 않은 경우

완전이행이 불가능하다면 채무자에게 더 이상 채무이행을 기대할 수 없으므로 이행불능에 준해 취급된다. 즉 채권자는 최고 없이 곧바로 계약을 해제할 수 있으며, 이행이익 범위 내의 전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대판 1993. 11. 23, 93다37328). 또한 완전이행이 가능하더라도 이러한 이행이 채권자에게 아무런 이익을 주지 않는 경우 역시 같다.

대판 1993. 11. 23, 93다37328

타인의 권리를 매매의 목적으로 한 경우에 있어서 그 권리를 취득하여 매수인에게 이전하여야 할 매도인의 의무가 매도인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이행불능이 되었다면 매수인이 매도인의 담보책임에 관한 「민법」 제570조 단서의 규정에 의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 하더라도 채무불이행 일반의 규정(「민법」 §546, §390)에 좇아서 계약을 해제하고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③ 확대손해배상청구

불완전이행으로 인하여 확대손해가 발생하였다면 확대손해의 배상도 청구할 수 있다.

7. 관련 문제-채무불이행책임의 확대


제391조 【이행보조자의 고의, 과실】 채무자의 법정대리인이 채무자를 위하여 이행하거나 채무자가 타인을 사용하여 이행하는 경우에는 법정대리인 또는 피용자의 고의나 과실은 채무자의 고의나 과실로 본다.



확인학습문제

01 다음 중 자연채무가 아닌 것은?


- ① 소멸시효가 완성된 채무
- ② 당사자 간에 부제소 특약을 한 경우
- ③ 승소의 종국판결 후 채권자가 소를 취하한 경우
- ④ 파산절차에서 면책된 채무

 자연채무란 채무자가 임의로 이행을 하지 않는 때 채권자가 그 이행의 강제를 소송으로 구할 수 없는 채무를 말한다.


- ① 절대적 소멸설에 따르면 채무가 절대적으로 소멸한다. 또한 상대적 소멸설에 따르면이라도 시효 원용 전에는 완전한 채무이며, 원용이 있은 후에는 채무가 소멸하므로 어느 경우든 자연채무가 아니다.

02 이행보조자책임(§391)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이행보조자는 사실상 채무이행을 돕는 자이면 족하다.
- ② 이행보조자로서의 피용자는 채무자의 지시 또는 감독을 받을 관계에 있을 것을 요한다.
- ③ 채무자가 채무불이행책임을 면하기 위해서는 자기 또는 이행보조자에게 고의, 과실이 없었음을 주장·입증하여야 한다.
- ④ 이행보조자는 채권자에 대한 관계에서 채무불이행책임을 부담하지 않는다.

 ② 「민법」 제391조에서의 이행보조자로서의 피용자라 함은 일반적으로 채무자의 의사관여 아래 그 채무의 이행행위에 속하는 활동을 하는 사람이면 족하고, 반드시 채무자의 지시 또는 감독을 받는 관계에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므로 채무자에 대하여 종속적인가 독립적인 지위에 있는가는 문제되지 않는다(대판 2002. 7. 12. 2001다44338).


03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 ① 이행보조자의 귀책사유는 곧 채무자의 귀책사유이다.
 - ② 채무이행의 불확정한 기한이 있는 경우에는 그 기한이 객관적으로 도래한 때로부터 지체책임이 있다.
 - ③ 채무불이행에 있어 고의, 과실이 없다는 입증책임은 채무자에게 있다.
 - ④ 이행보조자책임에 있어 채무자는 언제나 배상책임을 진다.
-  ② 채무이행의 불확정한 기한이 있는 경우에는 채무자는 기한이 도래함을 안 때로부터 지체책임이 있다.
- ④ 이행보조자책임(§391)에는 사용자책임(§756)과 달리 면책규정이 없다.


04 이행지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① 채무이행에 확정기한이 있는 경우 채무자가 기한이 도래함을 안 때로부터 지체책임이 있다.
 - ② 채무이행에 불확정기한이 있는 경우 기한이 도래하고 상당한 기간이 지난 때부터 지체책임이 있다.
 - ③ 채무이행에 기한이 없는 경우 채권자로부터 이행청구를 받아야 비로소 지체책임을 진다.
 - ④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은 불법행위성립 후 채권자가 이행청구를 한 때에 비로소 지체책임을 지게 된다.
-  ① 채무이행에 확정기한이 있는 경우 기한이 도래한 때로부터 지체책임을 진다(§387 ① 전단).
- ② 채무이행에 불확정기한이 있는 경우 채무자가 기한이 도래함을 안 때에 지체책임을 진다(§387 ① 후단).
- ④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은 불법행위성립과 동시에 지체책임을 진다.


05 이행지체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증권적 채권의 경우에는 그 기한이 도래하였더라도 그 증서의 소지인이 증서를 제시하여 이행을 청구하여야 지체책임이 성립한다.
 - ② 기한이 없는 채무에 있어 그 채무가 발생함과 동시에 이행기에 도달하지만 지체책임을 묻기 위해서는 채권자의 최고가 있어야 한다.
 - ③ 정지조건부 기한이익 상실의 특약을 한 때에는 그 특약에서 정한 기한이익 상실사유가 발생함과 동시에 이행지체책임을 져야 한다.
 - ④ 형성권적 기한이익 상실의 특약을 한 때에는 그 특약에서 정한 기한이익 상실사유가 발생함과 동시에 이행지체책임을 져야 한다.
-  ④ 형성권적 기한이익 상실 특약의 경우 기한이익 상실사유가 발생하였더라도 채권자의 의사표시가 있어야만 채무자에게 이행지체책임을 발생한다(대판 2002. 9. 4. 2002다28340).

06 다음 중 이행지체의 효과가 아닌 것은?


- ① 계약해제권의 발생
 - ② 채권자의 책임감경
 - ③ 손해배상청구권의 발생
 - ④ 채무자의 책임가중
-  이행지체의 경우 채권자는 상당한 기간을 최고한 후 계약을 해제할 수 있으며(§544) 이때 채무자의 책임은 더욱 가중된다(§392). 또한 채권자는 이행지체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390). 그러나 채권자의 책임이 감경되는 것은 아니다.

07 甲은 乙에게 2월 3일 금 500만 원을 차용하였으나 변제기가 지난 다음에도 변제하지 않았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甲의 乙에 대한 채무는 이행불능이 될 수 없고, 이행지체만이 가능하다.
 - ② 乙은 甲에게 손해의 입증 없이 지연이자를 청구할 수 있다.
 - ③ 甲과 乙 사이의 지연배상은 특별한 약정이 없는 이상 법정이율에 따른다.
 - ④ 甲은 乙에게 이행지체로 인한 계약취소권을 행사할 수 있다.
-  ④ 이행지체의 효과로 계약취소권은 인정되지 않는다.

05 ④ 06 ② 07 ④


31 채무불이행으로 인하여 채권자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 채무자가 채무를 이행하였다면 채권자가 지출하였을 비용을 손해배상액에서 공제하는 것을 무엇이라고 하는지 쓰시오.

 손익상계에 의하여 공제되는 이득은 손해배상책임이 발생하는 원인과 상당인과관계가 있는 것에 한한다.

32 채권자가 자기의 채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그 채무자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권리를 무엇이라고 하는지 쓰시오.

 제404조 참조

33 재산목록의 작성, 골동품의 감정 등과 같이 채무자만이 이행할 수 있는 일신전속적 채무, 즉 부대체적 작위채무에 적합한 강제이행방법을 쓰시오.

 간접 강제는 채무자에게 심리적 압박을 가하여 채무자가 급부내용을 실현하도록 강제하는 것이다.

- 31 손익상계
- 32 채권자대위권
- 33 간접 강제



제3장

수인의 채권자 및 채무자

www.imbccampus.com

제1절 분할채권관계

1. 의의

제408조 【분할채권관계】 채권자나 채무자가 수인인 경우에 특별한 의사표시가 없으면 각 채권자 또는 각 채무자는 균등한 비율로 권리가 있고 의무를 부담한다.

하나의 가분급부에 대하여 채권자 또는 채무자가 다수 존재하는 경우에 특별한 의사표시가 없는 이상 채권 또는 채무가 수인의 채권자 또는 채무자 사이에 분할되는 채권관계를 말한다.

대판 2002. 2. 8, 2000다50596
채권의 일부 양도가 이루어지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각 분할된 부분에 대하여 독립한 분할채권이 성립한다.

2. 요건

분할채권관계가 성립하기 위한 요건은 다음과 같다.

- 성질상 분할할 수 있는 급부일 것
- 채권자나 채무자가 수인일 것
- 당사자 사이에 분할채권관계를 배제한다는 특약이 없을 것
- 법률규정상 분할채권관계를 배제하지 않을 것

3. 분할채권관계의 효력

(1) 대외적 효력

분할채권의 채권자는 자기부분에 해당하는 채권만을 가지며 분할채무의 채무자는 자기의 부담 부분만의 채무를 진다. 분할채권관계가 쌍무계약으로서 성립한 경우에는 계약의 해지·해제에 관한 불가분성이 적용되어 계약의 해지나 해제는 그 전원으로부터 또는 전원에 대하여 하여야 한다. 또한 해지나 해제의 권리가 당사자 1인에 대하여 소멸한 때에는 다른 당사자에 대해서도 소멸한다(\$547). 동시이행항변권을 행사할 수 있게 되어, 예를 들어 특정물매매계약의 대금채무를 분할채무로 약정하였다면 매도인이 목적물을 인도하지 않는 경우 분할채무자들은 대금지급을 거절할 수 있다.

(2) 분할채권, 채무자 1인에게 생긴 사유의 효과

채무자 1인이 채권자에게 한 변제, 대물변제, 공탁 등과 같이 채권에 만족을 주는 사유와 채무자 1인이 한 변제제공, 채권자지체는 절대적 효력을 갖는다. 이행의 청구, 시효중단, 이행지체의 경우에는 학설의 대립이 있고 경계, 면제, 혼동, 시효 등은 다른 채권자 또는 채무자에게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3) 대내적 효력

분할채권자 또는 분할채무자 상호 간의 내부관계에 있어서도 특별한 약정이 없는 한 균등한 비율에 따른 권리를 가지며 의무를 부담한다. 따라서 채권자 사이에서 또는 채무자 사이에서 분급관계나 구상관계는 원칙적으로 발생하지 않는다. 그러나 내부관계가 균등하지 않은 경우에 취득비율 이상을 취득한 채권자는 초과부분을 다른 채권자에게 분급하여야 하며(\$741), 부담비율 이상을 변제한 채무자가 다른 채무자에게 구상할 수 있다.

제2절 불가분채권관계

1. 의의

제409조 【불가분채권】 채권의 목적이 그 성질 또는 당사자의 의사표시에 의하여 불가분인 경우에 채권자가 수인인 때에는 각 채권자는 모든 채권자를 위하여 이행을 청구할 수 있고 채무자는 모든 채권자를 위하여 각 채권자에게 이행할 수 있다.

불가분채권관계란 하나의 불가분급부에 대하여 수인의 채권자 또는 채무자가 각각 채권을 가지거나 채무를 부담하는 다수당사자의 채권관계를 말한다(\$409). 불가분채권관계에 있어서는 그 주체의 수만큼 채권 또는 채무가 존재하나, 급부의 불가분성으로 인하여 각 불가분채권자는 일부의 급부를 청구할 수 없고, 각 불가분채무자는 일부의 이행을 할 수 없다.

2. 요건

채권이 성질상 또는 당사자의 의사표시에 의하여 불가분인 때에 불가분채권관계는 성립한다.

3. 불가분채권의 효력

(1) 대외적 효력

각 채권자는 모든 채권자를 위하여 이행을 청구할 수 있다(\$409). 따라서 각 채권자는 단독으로 모든 채권자를 위하여 자기에겐 급부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

(2) 채권자 중 1인에게 생긴 사유의 효과

제410조 【1인의 채권자에 생긴 사항의 효력】 ① 전조의 규정에 의하여 모든 채권자에게 효력이 있는 사항을 제외하고는 불가분채권자 중 1인의 행위나 1인에 관한 사항은 다른 채권자에게 효력이 없다. ② 불가분채권자 중의 1인과 채무자 간에 경계나 면제 있는 경우에 채무 전부의 이행을 받은 다른 채권자는 그 1인이 권리를 잃지 아니하였으면 그에게 분급할 이익을 채무자에게 상환하여야 한다.

① 절대적 효력

채권자 1인에 대한 사유가 모든 채권자에게 효력이 미치는 경우이다. 각 채권자는 모든 채권자를 위하여 이행을 청구할 수 있기 때문에 이행청구에 따른 시효중단, 이행지체의

효과는 절대적 효력을 가진다. 또한 채무자는 각 채권자에게 이행할 수 있으므로 채권자 1인에 대한 채무자의 변제, 변제의 제공, 수령지체의 효과도 절대적 효력을 가진다(§409).

② 상대적 효력

채권자 1인에 대한 사유가 다른 채권자에게는 아무런 영향을 주지 않는 경우이다. 예를 들어 혼동이 1인의 채권자와 채무자 사이에서 생긴 경우 이는 다른 채권자에게 영향을 주지 않는다(§410 ①). 또한 채권자 1인과 채무자 사이에 경거나 면제가 행해진 경우에도 다른 채권자는 채무자에게 전부의 이행을 청구할 수 있다. 다만 이로써 전부의 변제를 받은 채권자는 경개 또는 면제를 행한 다른 채권자가 권리를 잃지 않았더라면 분급해야만 했을 이익을 직접 채무자에게 반환하여야 한다(§410 ②). 상계, 대물변제, 시효완성의 효과 역시 상대적 효력사유에 해당한다.

(3) 대내적 효력

불가분채권의 변제를 받은 채권자는 다른 채권자에 대하여 내부관계의 비율에 따라 그의 급부 이익을 분급하여야 한다.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내부관계는 균등한 것으로 추정된다.

4. 불가분채무의 효력

제411조 【불가분채무와 준용규정】 수인이 불가분채무를 부담한 경우에는 제413조 내지 제415조, 제422조, 제424조 내지 제427조 및 전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1) 대내적 효력

채권자는 공동채무자 가운데 어느 한 채무자에 대하여 또는 모든 채무자에 대하여 동시에 또는 순차로 전부의 이행을 청구할 수 있다(§411, §414).

(2) 채무자 중 1인에게 생긴 사유의 효력

불가분채무에 있어서도 공동채무자 1인에게 발생한 사유는 상대적인 효력을 지니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따라서 불가분채무는 연대채무보다 강한 담보적 기능을 지닌다(§416~§423).

① 절대적 효력

채무자 1인의 변제, 대물변제, 상계, 공탁과 같이 채권에 만족을 주는 사유와 채무자 1인의 변제와 변제의 제공이나 이에 따른 채권자의 수령지체는 다른 채무자에 대해서도 효력을 미친다.

법학과 3단계

② 상대적 효력

채무자 1인과 채권자 사이의 경계, 면제, 시효완성의 효과는 다른 채무자에게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다. 채권자가 채무자 1인에게 행한 이행청구도 제416조가 제411조에 의하여 준용되지 않으므로 연대채무에서와는 달리 상대적 효력을 갖는다(통설).

(3) 대내적 효력

변제를 한 공동채무자는 다른 채무자에게 그들의 부담부분에 대하여 구상할 수 있다.

제3절 연대채무

1. 의의

제413조 【연대채무의 내용】 수인의 채무자가 채무 전부를 각자 이행할 의무가 있고 채무자 1인의 이행으로 다른 채무자도 그 의무를 면하게 되는 때에는 그 채무는 연대채무로 한다.

채권자가 수인의 채무자 중 그 어느 채무자에 대하여 또는 동시나 순차로 모든 채무자에 대하여 채무의 전부나 일부의 이행을 청구할 수 있을 뿐 아니라 그 이외의 경계, 면제, 혼동, 소멸시효 완성 등에 의해서 어느 한 채무자에게 발생시킨 사유도 다른 채무자에게 미치게 할 수 있는 채권관계이다(§413, §414).

2. 법적 성질

(1) 독립성

연대채무에 있어 각 채무는 채무자의 수만큼 병존하면서 별개의 독립된 채무이다.

(2) 주관적 공동관계

연대채무에 있어서 채무자 상호 간에는 불가분채무에 있어서와는 달리 긴밀한 주관적 공동관계가 있다. 즉 채권을 만족시키는 것 이외의 사유도 다른 채무자에 대해 효력을 미치게 할 만큼 채무자 사이가 긴밀히 결합되어 있다.

3. 성립

(1) 법률행위에 의한 연대채무의 성립

법률행위의 당사자가 연대채무를 부담한다는 의사를 표시한 경우 연대채무가 성립한다.

(2) 법률규정에 의한 연대채무의 성립

법인의 사원, 이사 및 기타 대표자(§35 ②), 공동차주(§616), 공동임차인(§654), 부부의 일상가사 채무(§832) 등에 대해 「민법」은 연대채무가 성립함을 규정한다.

4. 효력

(1) 대외적 효력

제414조 【각 연대채무자에 대한 이행청구】 채권자는 어느 연대채무자에 대하여 또는 동시나 순차로 모든 연대채무자에 대하여 채무의 전부나 일부의 이행을 청구할 수 있다.

채권자는 연대채무자 중의 어느 한 사람에게 대하여 채무의 전부나 일부의 이행을 청구할 수도 있고, 모든 채무자에 대하여 동시에 또는 순차로 채무의 전부나 일부를 청구할 수 있다(§414).

(2) 채무자 1인에 대하여 생긴 사유의 효력

① 절대적 효력사유

㉠ 변제, 변제와 동일하게 볼 수 있는 대물변제, 공탁

「민법」상 명문의 규정이 없지만 채권의 만족이라는 목적을 달성케 하는 것이므로 당연히 절대적 효력이 인정된다.

㉡ 이행청구

제416조 【이행청구의 절대적 효력】 어느 연대채무자에 대한 이행청구는 다른 연대채무자에게도 효력이 있다.

이행청구는 절대적 효력을 갖는다(§416). 연대채무자 1인에 대한 이행청구는 모든 연대채무자에 대해 소멸시효중단 및 기한 없는 채무의 이행기 도래 효과를 발생시킨다.


㉢ 경계

제417조 【경계의 절대적 효력】 어느 연대채무자와 채권자 간에 채무의 경계가 있는 때에는 채권은 모든 연대채무자의 이익을 위하여 소멸한다.




확인학습문제


01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 ① 「민법」상 다수당사자의 채권관계는 원칙적으로 분할채권관계이다.
 - ② 분할채권의 각 채권자는 자기부분에 해당하는 채권만을 갖는다.
 - ③ 분할채권관계가 쌍무계약인 경우 계약의 해제나 해지는 1인에 대하여 하면 된다.
 - ④ 분할채무에 있어서 채무자 사이에 부담부분이 없으며 어느 채무자가 다른 채무자의 채무를 변제한 경우에는 타인의 채무변제가 된다.
-  ③ 분할채권관계가 쌍무계약인 경우 해제나 해지의 불가분성이 적용된다(§547). 따라서 전원으로 부터 또는 전원에 대하여 해제나 해지의 의사표시를 해야 한다.


02 다음 중 분할채무가 발생하는 경우는?

- ① 수인의 채무자가 각자 돈을 빌리는 경우의 금전채무
 - ② 수인이 공동으로 법률상 원인 없이 타인의 물건을 점유함으로써 인하여 부담하게 되는 부당이득의 반환채무
 - ③ 가사에 관하여 부부의 일방이 채무를 부담하는 경우
 - ④ 법인의 목적범위 외의 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 그 사항의 의결을 찬성 또는 집행한 법인의 사원, 이사의 책임
-  ① 판례는 수인의 채무자가 각자 돈을 빌리는 경우 특별한 의사표시가 없으면 이는 분할채무가 되고 특별한 의사표시가 있거나 그 성질상 불가분인 경우에 한하여 불가분채권이 성립한다고 판시하였다(대판 1985. 4. 23. 84다카2159).
- ② 불가분채무(대판 2001. 12. 11. 2000다13948)
 - ③ 연대채무(§832)
 - ④ 연대채무(§35 ②)


03 불가분채무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수인이 공동으로 부동산을 매수한 경우에 매도인의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이행의무는 불가분채무이다.
 - ② 공동상속인들의 건물철거의무는 불가분채무이다.
 - ③ 불가분채무의 경우 채권자지체의 효력은 상대적이다.
 - ④ 채무자 1인과 채권자 사이의 경계, 면제, 시효완성 등은 다른 채무자에게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다.
-  ③ 제411조에서 제422조가 준용되므로 채권자지체의 효력은 절대적이다.
② 대판 1980. 6. 24, 80다756

04 甲과 乙이 A의 토지를 2,000만 원에 매수하면서 그 대금채무를 불가분으로 하는 약정을 하였다. 이때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 ① 甲이 A에게 변제한 경우 그 효력은 乙에게도 미친다.
 - ② 甲이 A에게 변제한 경우 乙에게 부담부분에 대한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다.
 - ③ A가 甲에게 채무를 면제한 경우 그 효력은 乙에게도 미친다.
 - ④ A는 甲과 乙 누구에게든 2,000만 원을 청구할 수 있다.
-  ③ 불가분채무에서는 연대채무에 관한 규정이 준용된다(§411). 변제, 대물변제, 공탁 등의 경우 절대적 효력을 갖지만 경계, 면제, 시효완성 등은 상대적 효력을 갖는다(통설). 따라서 A가 甲에게 채무를 면제하였어도 그 효력은 甲에게만 미치고 乙에게는 미치지 않는다.


05 연대채무자 1인에 대해 생긴 사유가 다른 연대채무자에게 그 효력이 미치지 않는 것은?

- ① 시효의 중단
 - ② 공탁
 - ③ 채권자지체
 - ④ 혼동
-  ① 시효의 중단은 상대적 효력사유이다.
② 공탁은 채권의 소멸사유로서 절대적 효력을 갖는다.
③ 제422조 참조
④ 제420조 참조

03 ③ 04 ③ 05 ①


06 A, B, C 3인은 **甲**에 대하여 900만 원의 연대채무를 부담하고 있다.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 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A, B, C의 부담부분은 각 300만 원이다.
- ② A에게 소멸시효가 완성된 경우 B, C는 A의 부담부분에 대해서 채무를 면한다.
- ③ A에 대한 압류로 A에 대한 시효가 중단되더라도 B, C에 대한 소멸시효는 중단되지 않는다.
- ④ 부담부분에 대한 특약이 없는 경우 A가 900만 원을 변제하였다면 B, C에 대하여 450만 원씩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다.


-  ④ 특약이 없으면 부담부분은 300만 원씩이므로 A는 자신의 부담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600만 원에 대하여 B, C에게 각 300만 원씩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다.
 - ① 제424조 참조
 - ② 제421조 참조
 - ③ 청구에 의한 시효중단은 절대적 효력을 지니지만(§416) 그 외의 사유로 시효가 중단되는 경우에는 상대적 효력만 지닌다. 따라서 압류는 상대적 효력을 지니므로 B, C에 대해 소멸시효는 중단되지 않는다.

07 연대채무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 ① 어느 연대채무자에 대한 법률행위의 무효나 취소의 원인은 다른 연대채무자의 채무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 ② 채권자는 어느 연대채무자에 대하여 또는 동시나 순차로 모든 연대채무자에 대하여 채무의 전부나 일부의 이행을 청구할 수 있다.
- ③ 어느 연대채무자에 대하여 소멸시효가 완성한 때에는 그 부담부분에 한하여 다른 연대채무자도 의무를 면한다.
- ④ 상계할 채권이 있는 연대채무자가 상계하지 아니한 때에도 다른 연대채무자가 그 채무자의 부담부분에 한하여 상계할 수는 없다.

-  ④ 상계할 채권이 있는 연대채무자가 상계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채무자의 부담부분에 한하여 다른 연대채무자가 상계할 수 있다(§418 ②).


25 보증채무의 보충성에 기한 권리로서 보증인 대신 주채무자에게 먼저 청구할 것과 주채무자의 재산에 대해 집행할 것을 항변할 수 있는 보증인의 권리를 쓰시오.

 다수설은 최고의 항변권과 검색의 항변권은 별개의 항변권으로서 구별된다고 하나 소수설 및 판례는 최고·검색의 항변권을 하나의 권리로 파악한다.

26 보증인이 주채무자가 이행하지 아니하는 채무만을 이행할 의무가 있는 성질을 무엇이라고 하는지 쓰시오.

 보증인은 주채무자가 이행하지 아니하는 채무만을 이행할 의무가 있고, 이에 따라서 보증인에게 는 최고·검색의 항변권이 인정된다.

27 수탁보증인에게만 인정되는 것으로 변제 기타 출재 등으로 주채무를 소멸시키지 않은 경우에도 주채무자에게 미리 행사할 수 있는 구상권을 무엇이라고 하는지 쓰시오.

 수탁보증인을 보호하기 위해 인정된다(§442).

25 최고·검색의 항변권

26 보충성

27 사전구상권